

# KERI Brief

##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심으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2015년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목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로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므로 위헌 소지도 있다. 2015년도 실적치를 보면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 부분이 미흡하여 가계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세수가 469억 원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었다. 또한 동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중 수단의 적절성과 법익의 비교형량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였고, 내부유보과세의 경제적 효과가 한정적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타당하지 않다. 동 제도로 인하여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저해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사익의 침해가 발생했는데, 그 사익의 침해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공익(가계 소득 증대)보다는 클 것이다.

정부는 2017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 종료하고 동 제도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여 3년간 한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문제되었던 배당·투자(토지분) 제외, 법인세율 인상 구간

과 동시적용 방지 등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논란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 글로벌 조세경쟁 시대에 세금은 국제적 추세 또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자국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외로 유례가 없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한다고 하므로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및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투자 및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다. 기존 국내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목적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다른 개인배당소득세 회피방지였다.

## 1. 검토배경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강화하는 세입개혁방안이 정부의 정책에 포함된 상황에서, 정부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그대로 연장하려다,<sup>1)</sup> 명칭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임<sup>2)</sup>

- \*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추가과세(10%)하는 제도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sup>3)</sup>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과세(20%)하는 제도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목적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함<sup>4)</sup>

- 도입 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세수증대 목적은 아니며, 투자·임금·배당 확대를 통해 추가세수를 "0(零)"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증가하는 유보금 규모에 비해 과세규모가 적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여<sup>5)</sup> 제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임

○ 도입 전부터 경제계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 이중과세, 기업 재무구조 악화 등을 주요 논거로 하여 반대하였음<sup>6)</sup>

- 이중과세 가능성, 기업 재무구조 악화 초래, 국내 기업 역차별, 장기적 투자 감소 초래 등 부작용이 많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은 철회되어야 하고, 특히 주요기업의 경우 외국인 및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측면에서 동 제도를 통한 배당증대가 개인의 소비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함

○ 작년 발표된 2015년 실적 현황을 보면 '가계소득으로의 순환(가계소득 증대)'의 달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일자리와 직결되는 '투자나 임금증가'가 아니라 주로 '배당 확대'를 선택하여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비판 받음
- 이에 정부는 2016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임금증가·배당액의 가중치를 1:1:1에서 1:1.5:0.5로 변경하였고,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하고, 대신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한다고 함

□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몰되지만 유사한 제도가 신설될 예정인 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과 이중과세 여부 등 위험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기업의 사적자치(사익)와 가계소득 증대(공익)라는 두 가지 범익의 비교형량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1) 기획재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2017.7.25.
- 2)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2017.8.2.
- 3) 지원방식: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함
- 4) 기획재정부, 「2014년 간추린 세법개정」, 2015, 63-65면 참조
- 5) 조세금융신문, "[J노믹스 세제개편 ③] 대기업 공제 원점 검토...기업소득환류세 폐지·확대 갈림길", 2017.6.27.
- 6)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사내유보 과세 검토에 대한 의견", 2014.7.

- 가계소득 증대라는 '공약'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의사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득을 유보하지 못해서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내 유보과세 도입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세법의 논리상 이중과세'와 '투자 촉진에 대한 실효성' 문제 때문에 입법화하지 않았음

□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현재 그 효과조차도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제도의 신설은 타당하지 않음**

○ 2017 세법개정안에 대기업 비과세·정비가 포함됨에 따라<sup>7)</sup> 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다면 기업경쟁력이 크게 상실될 우려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외 유사제도 및 일본의 도입 논의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 함.

○ 특히 실제 실적치를 이용한 실효성 분석과 헌법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통해 동 제도 및 유사 제도의 존폐 여부를 제안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과 위헌성 검토를 통해, 동 제도의 실질적인 연장 또는 유사 제도로 판단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함

## 2.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검토

### 1) 도입 목적 및 내용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4년 8월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일부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sup>8)</sup> 중 하나로 도입되었음<sup>9)</sup>**

○ 정부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유도(가계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음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

-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2017.12.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7)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1~3%→0~2%), 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3%→1%),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80%→50~60%) 등

8)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란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내보내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그리고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시켜 배당을 촉진하도록 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일컫는 것으로, 일명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설명됨(기획재정부, 「2014년 간추린 세법개정」, 2015, 63~65면 참조)

9)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2014.8. 참조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목적  
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재적 조세<sup>10)</sup>의 하  
나로 다음과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유도적 조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될 경우 기  
업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내에 유보한 이익  
잉여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를 투자·배당·임금  
증가 등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시행한다는 점  
에서 유도적 조세<sup>11)</sup>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임

○ (제재적 조세) 대상 기업이 법적으로 계산된 일정  
액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배당·임금에 사용  
하지 않는 데 대하여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라는 불이익을 정책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예정  
한다는 점에서 제재적 성질을 띠는 조세, 즉 제재  
적 조세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음<sup>12)</sup>

-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정부의 근거는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는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경  
제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난에 바탕을 두고 있음<sup>13)</sup>

- 다만, 이러한 비난의 의도는 입법 과정에서 잘 드  
러나지 않음.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제도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기업을 제재하려는 의  
도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 입법조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일종의 '숨은 제재'로 해석될  
수 있음

○ (재정적 조세) 기업소득환류세제 또한 실체법인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제인 이상, 일단 재정  
목적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실제로 2014년 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상정 당시  
국회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검토에서 해당 납세의무 기업들의 추가적인 세부  
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sup>14)</sup>

- 그러나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정 세부담  
수준을 '0(零)'으로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책목적  
달성이 우선시이고 재정목적은 사실상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sup>15)</sup>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추가과세하며(단일 세율 10%),<sup>17)</su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용 시한: 3년간 한정 적용(2017.12.31.까지),  
2015년 발생소득분부터 과세함

○ 적용 대상: 자기 자본 500억 원 초과 기업(중소기  
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 방식: 개별기업 특성에 의해서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

- (A방식): [당기 소득 × α(80%) - (투자+임금증가+  
배당액+상생)] × 세율(10%)

- (B방식): [당기 소득 × β(30%) - (임금증가+배당  
액+상생)] × 세율(10%)

10) '제재적 조세'란, 유도적 조세의 하부 개념으로 특정 대상이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류지민, "조  
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0권 제1집, 한국세법학회,  
2014, 18면)

11) '유도적 조세'란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이라는 고전적이고도  
소극적인 목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사회를 유도하고 그러한 상태를  
형성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는 일련의  
조세를 말함(헌재 2009.7.30. 2007헌바15)

12)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신정11판), 박영사, 2015,  
575면

13)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 세제의 이면에는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가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 전반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 사내유보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신규 투자에 소극적이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임(김문철·전영순,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사내유보이익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4권 제3호, 2015, 737-738면)

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  
11783) 검토보고", 2014.11., 17-18면

15) 조세일보, "최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 세수목적 절대 아니다',  
2014.7.17.자 기사 참조

16) 정부는 세법개정안 세수추계서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수  
효과를 '추정공란'으로 제출하였음

17) 법인세법 제5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 가중치(투자:임금:배당:상생): 2015~2016년 (1 : 1 : 1 : 1) ⇒ 2017년 (1 : 1.5 : 0.5 : 1)<sup>18)</sup>
- 해당 연도 기준에 미달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기준 초과금액(초과환류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해당 연도 초과환류액은 다음 연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액수와 공제 가능함

## 2) 국내의 유사 제도

□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유사한 제도는 국내에는 2001년까지 시행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가 있고, 외국에는 미국의 유보이익세와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과세가 있음

-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와 미국 및 일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추가과세제도는 모두 사내유보를 통하여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입법목적과 가지고 있어 기업소득환류세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
- 다만, 이들 모두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유사함

### (1) 과거 유보소득 과세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

□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 원 초과 비상장대법인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25%(1993년 15%로 완화)의 세율로 추가과세하는 제도였으나, 2001년 세법 개정 시 폐지되었음<sup>19)</sup>

- 법인의 조세 구조는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각각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회사나 친지

들이 함께 출자한 회사와 같은 폐쇄법인<sup>20)</sup>의 경우에는 주주가 해당 법인을 소유하며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단계의 과세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주주단계 과세의 무기한 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적정유보초과소득세임<sup>21)</sup>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의 확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도'를 유사한 내용으로 재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18) 2015년도 실적에서 배당증가에 중점을 두고 임금증가를 통한 환류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어 2016년 말 세법개정 시 가중치가 조정되었음(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19)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1991~2001년)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 시행)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수차례 완화되다가 2001년 말 폐지되었음(인세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58호)

- 1993.12. 개정 : 세율을 15%로 인하
- 1994.12. 개정 : 기업발전적립금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상법인 자기자본총액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
- 1998.12. 개정 : 협회등록(상장)법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2조의2에서 제56조로 이동

20) 폐쇄회사(closely-held corporation)는 일반적으로 공개 회사와 대비되는 회사의 형태로서 쓰이고 있음. 법률규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구성원이 소수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원 상호간에 긴밀한 인적인 신뢰관계가 있으며, 회사 구성원의 사원권 양도에 법률상의 제한이 있거나 설령 그런 제한이 없더라도 이를 매매할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원권의 양도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사원의 대다수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성원이 회사로부터 얻는 이익도 회사의 경영결과에 따른 이익을 배당받는 형식보다는 회사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급여 등의 회사로부터의 받는 각종 이익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회사임(유시창, "폐쇄적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수파 주주의 보호 방안", 『경희법학』 제44권 제2호, 2009, 148-149면)

21) 과다유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고 상장법인과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함에 입법목적에 있었음(국회 재무위원회,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990.12.]

- 다만, 과거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세'라고 함)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다유보 역제가 목적이었다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뿐만 아니라 투자, 임금증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해당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기업정책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및 이중과세라는 경제계의 지속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음**

- 가장 큰 이유는 1990년대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문제가 시급하였기 때문임
- 당시 재정경제부도 2001년 8월 이 제도의 폐지 이유에 대하여,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유보소득에 대한 차등 법인세율을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 법인이 유보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법인세 과세체계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sup>22)</sup>

(2) 미국의 유보이익세

▣ 미국 내국세입법<sup>23)</sup>은 법인세 이외에도 특정회사의 분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일종의 특별한 징벌세(유보이익세)를 부과하고 있음

- 내국세입법 제531조에 따라 부과되는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란 특정 법인에 대하여 과도한 이윤을 쌓아 놓는 것을 징벌하기 위해 부과된 조세임<sup>24)</sup>
-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익을 일정액 이상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이익을 유보하고 있는 모든 법인은 유보이익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 보통 유보이익세는 주주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소수의 폐쇄회사(closely-held corporation)에 대하여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비공개법인뿐만 아니라 공개법인도 유보이익세의 과세대상이 됨<sup>25)</sup>
- 유보이익세는 과세유보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데, 과세유보소득은 정해진 조정과정을 거쳐 산정한 과세소득액에서 지급배당공제 및 유보이익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함

22) 재정경제부, “2001년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01, 25면  
 23) Title 26 of the United States Cod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24) 이는 성공 자체에 대한 제재(a penalty on success itself)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기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 중 유보이익세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대한 사후(事後)적 결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가장 인기 없는 조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Elliott, Homer L.,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and the Reasonable Needs of Business : A Proposal, 12 Wm. & Mary L. Rev. 34, 1970, p.34)  
 25) 그러나 실제로는 경영진이 주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이익유보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비공개법인에 대하여 주로 적용되고 있음



### (3)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과세

#### □ 일본은 법인세법에 특정동족회사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 동족회사는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여 주주의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 법인세법 제67조는 개인사업자와 동족회사 간의 부담의 공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동족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외에 그 이익의 내부유보에 대해 특별한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특정)동족회사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동족관계자)이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또는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 보유하는 회사를 말함<sup>26)</sup>

-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유보금액 가운데, 유보공제액을 넘는 부분의 금액이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3단계의 초과누진세율(10%, 15%, 20%)로 과세가 이루어짐<sup>27)28)</sup>

□ 유보공제액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유보 혹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이익의 적립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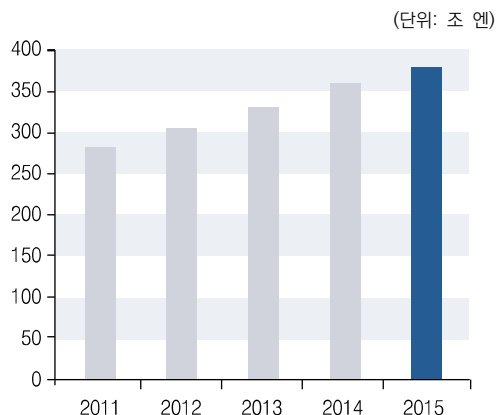
### 3) 일본의 사내유보과세 도입 논의

□ 일본 재무성이 2016년 9월 발표한 2015년도 법인기업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내부유보액'은 377조 엔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함.<sup>29)</sup> 그러나 기업의 이익이 설비투자자와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서 내부유보에 대한 과세 논란이 발생하였음

○ 내부유보는 2012년 말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 계속 증가하였음.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와 기업 감세(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었지만, 기업들은 신흥국 경제 침체에 따른 세계 경제의 하락 우려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익을 유보하였음<sup>30)</sup>

○ 내부유보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은 전년도보다 23조 4,914억 엔(6.6%) 증가한 377조 8,689억 엔으로 4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음<sup>31)</sup>

〈그림 1〉 일본 법인기업의 이익잉여금 추이



자료: 財務省, "年次別法人企業統計調査 概要 - 平成27年度 -", 2016.9.1.

26) 일본 법인세법 제67조 제2항

27) 일본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28) 그리고 초과누진세율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해당 제도가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기업과의 사이에서 세부담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의 세율구조의 틀에 따른 필요가 있기 때문임 (子宏, 『租税法』(第十九版), 弘文堂, 2014, 454-455頁)

29) 財務省, "年次別法人企業統計調査 概要 - 平成27年度 -", 2016.9.1.

30) 産経ニュース, "27年度の内部留保は過去最高くすぶる課税", 2016.9.2.

31) 우리나라도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논의 시 사내유보금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음(2011년: 636.8조 원 ⇒ 2015년: 831.5조 원)

□ 정부·여당 내부적으로 법인세 부담 경감 등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윤을 축적하는 현상에 불만을 품는 경향이 많아지고,<sup>32)</sup> 설비투자자와 임금인상을 위해 내부유보에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음<sup>33)</sup>

○ 그 배경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초조함이 있었음. 2016년 4~6월 국내 총생산(GDP)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부분이 전기 대비 0.7% 증가에 그쳤으며, 주된 요인은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의 부진이었음<sup>34)</sup>

- 일본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설비투자 확대 및 임금인상에 연결하고 개인 소비를 복돋우는 '경제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였지만, 2016년 4~6월 통계에서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3.1% 늘었지만 증가율은 1분기(4.2%)보다 둔화되고, '종업원 급여'는 거의 변화없이 약 28조 엔이었음[전기 대비 0.7% 증가하였지만, 1분기(2.5%)보다 둔화]<sup>35)</sup>

○ 그러나 재계의 반응은 정부와 상반되었음. 내부유보는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 등으로 보유되어 쉽게 쓸 수 없고, 추가 과세하면 법인세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정례 회견에서 '내부유보는 새로운 설비 투자나 기업의 합병·매수(M&A)에 대비한 자금'이라며 "경영에 자유도를 주는 원천이다. 과세가 기업의 의욕을 꺾고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했음<sup>36)</sup>

- 기업은 내부유보를 통째로 현금으로 담아 두는 것이 아니라, 공장 건설이나 해외 기업 인수 등에 충당하고 있으며, 현금이 아닌 공장이나 주식 등 모습을 바꾼 형태로도 존재함

- 2015년도의 현금과 예금은 전년도보다 약 14조 엔 늘었지만 경제계는 "기업의 운영자금 1.6개월치 정도로 적정 범위를 넘어선 수준은 아니다"(경단련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라고 주장하였음. 운영

자금은 인건비와 원자재비 등 향후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자금으로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및 예금을 어느 정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sup>37)</sup>

□ 일본 내각부는 수차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내부유보과세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 내부유보과세는 법인세가 과세된 후 추가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일 수 있고, 그 경제효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설비투자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내부유보과세를 도입하지 않았음<sup>38)</sup>

○ (2015년 11월 기자회견) 내부유보과세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함<sup>39)</sup>

- 32)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생담당상은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내부유보를 설비투자 및 임금증가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충분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함
- 33) 내부유보과세에 대한 논의는 2010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민주당) 내각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내부유보금 증가가 계속되었지만 투자 및 임금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베 내각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음
- 34) 2016년 4-6월 개인 소비는 0.2% 증가로 저조했고, 설비투자는 0.1% 감소했음
- 35) 財務省, "四半期別法人企業統計調査 概要 - 平成28年 4~6月期 -", 2016.9.1.
- 36) 産経ニュース, "27年度の内部留保は過去最高くすぶる課税", 2016.9.2.
- 37) 毎日新聞, "内部留保 増え続け 377兆円 賃上げ、投資迫る政府", 2016.11.6.
- 38) "이익잉여금은 일반기업과세된 후의 것으로, 추가과세한다면 이중과세임. 동족회사는 어쨌든, 대기업의 징벌적 유보금 과세라는 [북풍]정책은 세금의 원칙이나 기업 행동을 왜곡하며 경제 효과도 한정적임. 기업이 임금인상과 설비투자를 하고 싶어지는 [남풍]정책이야말로 옳은 방식임"(森信 茂樹, "内部留保課税を考える", 「月刊 資本市場」, No.376, 2016.12.)
- 39) 内閣府, "甘利内閣府特命担当大臣 記者会見 要旨", 2015.11.20.



- ‘첫 번째, 세금의 논리에 따라 이중 과세가 된다는 것. 법인세를 낸 다음의 순이익에 다시 과세하기 때문임’
- ‘두 번째, 효과의 측면에서 의문임. 과거 내부유보 과세를 한 국가가 있지만, 그것은 배당을 늘리기 위한 압력으로 시행하였고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별로 없음’
- (2016년 9월 기자회견) ‘기업의 내부유보액이 과다하므로 내부유보액이 설비투자나 임금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내부유보과세보다는 다른 정책으로 설비투자를 장려하여야 한다’고 함<sup>40)</sup>
- “2015년 세제개정에서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2018년까지 50%의 고정자산세<sup>41)</sup>를 감면하는 등의 정책으로 설비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경단련의 사카키바라 회장도 “2015년부터 10조 엔의 증가, 2018년도에는 80조 엔 설비투자를 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임

### 3.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

#### 1) 실효성 분석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2015년도 실적치, 국제수지 중 배당소득 현황 등을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려 함. 여기서 실효성은 입법 당시 정부가 주장한 가계소득으로의 순환(가계소득 증대)이라는 정책목적의 달성 여부를 말함
- 2015년도 실적치를 보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임금증가 부분이 미흡하여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적인 목적만 달성하여(세수증가) 기업들에 부담이 되었음
- 동 제도의 대상법인 3,029개 가운데 1,007개 기업에서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법인세 산출세액은 5,755억 원임. 이 중 147개 기업이 469억 원의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860개 기업은 5,286억 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차기환류적립금)
- 다음 연도에 기준초과금액(초과환류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월한 차기환류적립금과 공제할 수 있으나, 약 5조 2천억 원 이상의 초과환류액이 없다면 2016년도의 과세규모는 더 클 것임

40) 内閣府, “石原内閣府特命担当大臣 記者会見 要旨”, 2016. 9.2.

41) ‘고정자산세’는 일본 지방세의 일종으로, 토지, 가옥, 상각자산 등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해당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시정촌이 고정자산의 가치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부과하는 세금임

〈표 1〉 기업소득환류세제 실적(2015년)

(단위: 개, 억 원)

구 분	과세대상기업	기준달성 (초과환류)	기준미달성(과세기업, 미환류소득 발생)		
			납입	과세유예	
기업 수	3,029	2,022	1,007	147	860
과세대상 기업 대비	100.0%	66.8%	33.2%	4.0%	27.2%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	-	5,755	469	5,286
과세기업 대비	-	-	100.0%	8.1%	9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7.6., 115면

〈표 2〉 배당소득의 국제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잠정)	
	3월	4월	3월	4월	3월	4월	3월	4월
경상수지	73.2	71.6	101.0	77.3	105.5	37.6	59.3	40.0
투자소득	3.6	-15.4	2.1	-30.8	-8.1	-40.0	-4.5	-49.6
배당소득	-1.4	-19.9	-3.9	-34.8	-12.3	-45.2	-8.5	-53.3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2014-2017년)

- 기획재정부가 가집계한 자료<sup>42)</sup>에 따르면 환류금액은 총 139조 5천억 원으로 투자가 100조 8천억 원, 배당이 33조 8천억 원, 임금증가가 4조 8천억 원이었음.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를 통한 환류가 미진하여 재정적인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기업소득의 가계소득으로의 선순환'이라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달성은 어려워 보임
-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나 임금의 증가보다는 배당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주된 배당지급시기의 배당 적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sup>43)</sup> 대주주를 제외하면 국내 일반 개인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 즉, 가계소득 증대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이 주로 지급되는 3, 4월의 국제수지를 비교한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이후 배당소득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동 제도의 도입 후 연도별 4월의 국제수지를 보면 배당 적자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배당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동 제도의 역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2) 위험성 검토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남은 소득인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일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될 수 있음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법인세 납부의무 주체인 법인에게 이미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일정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부담의 본질이 같은 조세를 다시 부과한다는 점 즉,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된 조세부담을 지우는 이중과세에 해당할 것임

42) 뉴스토마토, "기업들, 임금보다 배당만 늘려..", 2016.9.25.

43) 배당적자는 높은 외국인 지분을 때문임.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시장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은 464조 1천억 원으로 30.56%에 달함(2016년 기준). 코스피시장은 34.01%, 코스닥 시장은 9.81%임

-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의 축적물인 사내 유보금을 어떻게 이용·수익하거나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며, 해당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됨<sup>44)</sup>
  - 법인으로 하여금 수익을 유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경우 법인이 재원 조달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어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며, 법인 스스로 적정 유보금 수준을 결정하는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개입으로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음<sup>45)</sup>
  - 이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소득을 사내에 유보하는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의도하는 '제재'의 성격을 가짐. 즉, 동 제도는 기업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sup>46)</sup>를 제한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이종과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종과세의 상황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재산권 행사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함<sup>47)</sup>
- 아래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헌법상의 각 원칙<sup>48)</sup>에 위배되어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에 따라 살펴보려 함
- 이종과세 상황이 조세법률주의 중 실질적 측면에서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되어야 재산권 행사 제한(위헌)이 아닐 수 있음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특히 수단의 적절성과 법익의 비교형량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며,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인세 인상과 동 제도의 동시적인 운영은 더욱 불합리함

- (목적의 정당성)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목적을 위한 한시적인 조세로서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상실화되거나 세수증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정당하지 못할 것임
-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나마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가 가계소득 증대라는 입법목적 외에 세수증대효과로 보는 듯한 언급을 한 점에 있어서는 정당하지 못할 수 있음
- (수단의 적절성)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이라면 그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앞에서 검토한 결과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기업소득이 반드시 가계소득으로 환류된다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sup>49)</sup> 수단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없음

44) 기업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 부담과 책임 하에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취득한 기업소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음

45)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5., 791면

46) 헌법은 제15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함(헌재 1998.10.29. 선고 97헌마345 결정)

47) 헌재 2009.3.26. 선고 2006헌바102 결정

48) 제재적 조세의 '조세'라는 성격에서 비롯되는 한계의 심사기준으로는 조세법률주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제재'라는 성격에서 비롯되는 한계의 심사기준으로는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을 고려해 볼 수 있음

49)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2014.12.10., 65면

〈표 3〉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위험성 검토

과잉금지원칙	검토 내용	위험 소지 여부
목적의 정당성	-한시적인 조세로서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목적을 위해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정당함 -다만 상설화되거나 세수증대 목적이려면 정당하지 못함	X(△)
수단의 적절성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O
피해의 최소화	-납세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체수단이 없으므로 적절함 -다만 '법인세율 3% 인상'과 동일한 세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법인세율 인상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X
법익의 비교형량	-실효성 없는 공익(가계소득 증대)보다는 사익(기업의 사적자치)의 침해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됨	O

- 일본의 경우에도 내부유보과세는 이중과세이고, 그 경제효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설비투자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유사 제도의 존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없음. 과거 운영된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는 재무구조 약화와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되었고, 외국의 유사 제도들은 그 목적이 조세회피 방지라는 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와는 다르기 때문임

○(피해의 최소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목적의 정당성을 가졌더라도 재산권의 제한은 최소·필요적인 한도에서만 허용되어야 함. 납세의무자의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동 제도는 '법인세율 3% 인상'과 동일한 세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대체수단으로는 첫 번째, 과징금 부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징금은 행정제재로서 세금보다 더 무거운 부담으로<sup>50)</sup>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 두 번째, 법인세율 인상을 보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율(10%)이 법인세율로 환산 시 최대 3%이므로<sup>51)</sup> 법인세율을 우회적으로 3% 인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법인세율의 인상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피해(부담)가 거의 동일하므로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한다면 2배의 세부담이 됨

○(법익의 비교형량) 기업소득의 가계소득으로의 선순환(가계소득 증대)이라는 '공익'과 기업의 사적자치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해보면 사익의 침해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동 제도로 인해서 침해되는 사익의 중요성이 공익과 비교하여 작지 않을 것임

- 앞 절에서 국제수지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공익보다 동 제도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큰 것으로 보임

50) 현재 2014.11.25. 선고 2002헌바61 결정

51)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③법인세」, 2017.6.1., 114면

#### 4. 요약 및 시사점

□ 2015년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로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2015년도 실적치를 보면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 부분이 미흡하였고, 세수가 469억 원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재정적인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기업에는 부담만 주게 됨

-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이 급격한 배당의 확대를 가져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이 주로 지급되는 3, 4월의 국제수지 중 배당소득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동 제도의 도입 전후(2014년과 2015년)를 비교해 보면 배당소득 적자가 74.8% 증가하였음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중 수단의 적절성과 법익의 비교형량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함

- 동 제도는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내부유보과세의 경제적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판단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에서 타당하지 못함

- 또한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익의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렇게 발생한 사익의 침해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공익(가계소득 증대)보다 더 클 것임

□ 한편, 2017 세법개정안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 종료하고, 동 제도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여 3년간 적용한다고 함

○ 일몰이 도래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중치를 조정해 새 이름으로 재탄생시킨 셈임. 새로운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본 구조도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유사함

- 적용대상이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고, 기업들은 투자포함형·투자미포함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흘려가도록 환류 대상을 조정하였고, 미환류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음

- 배당과 토지 투자분은 제외하였고, 투자 대 임금증가 대 상생협력지원지출에 대한 가중치가 각각 1:2~3:3으로 차등화되었음

-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대상이 되는 근로자도 총 급여 1억 2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대상을 더 좁혔음

#### 〈그림 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방식

$$\text{A) } [ \text{기업소득} \times \alpha (60\sim 80\%) - \{ \text{투자}(1) + \text{임금증가}(2\sim 3) + \text{상생지원}(3) \} ] \times 20\%$$

$$\text{B) } [ \text{기업소득} \times \beta (10\sim 20\%) - \{ \text{임금증가}(2\sim 3) + \text{상생지원}(3) \} ] \times 20\%$$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천억 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임<sup>52)</sup>

- 헌법상 피해의 최소화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과 내부유보금 과세의 동시 운영을 방지한 점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제도 비교는 〈표 4〉와 같음

52) 예컨대 과표 5천억 원 기업은 과표 2천억 원까지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 과표 3천억 원에 대해서는 인상된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됨

〈표 4〉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비교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91~'01)	기업소득환류세제 ('15~'17)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미국의 유보이익세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
제도 취지	-조세회피 목적의 과다 유보 억제	-기업소득을 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으로 유도	-기업소득을 투자·임금 증가·상생지원 등으로 유도	-주주의 배당소득 회피를 방지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과세 방식	-과다유보분(당기순 이익의 50% 초과)에 추가 과세	-투자·임금증가·배당 등 이 당기소득의 일정 수준 (80%) 미달 시 추가과세	-투자·임금증가·상생 지원 등이 당기소득의 60~80% 미달 시 추가 과세	-과세소득액에서 지급 배당공제와 유보이익 공제 차감분에 추가 과세	-유보금액 중 유보공제 액 초과분 추가과세
세율	-15%	-10%	-20%	-20%	-3천만 엔 이하 : 10% -3천만 엔~1억 엔: 15% -1억 엔 초과 : 20%
적립 금	-초과유보 상당액 적립 후 다양한 용도로 사 용 허용	-2년(해당연도 포함) 내 투 자·임금·배당 등에 사용 →미사용 시 과세	미정	-	-
적용 대상	-비상장 대기업(자본 100억 원 초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좌동, 다만 당기소득 계산 시 2천억 원 초과 소득은 제외	-비공개, 공개법인 (실질적으로 비공개 법인만 대상)	-동족회사
특징	-적립금 사용기한이 없 고, 사용목적도 광범 위하여 과세 실효성 한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을 위해 폐지	-2~3년 내 투자·임금·배 당에 사용촉진, 기업소득 의 가계소득으로의 선순 환이 목적 -실효성과 위헌성 측면에 서 문제가 있음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 목적 -제도 신설이 아니라 기 업소득환류세제의 실질 적인 연장	-탈세방지 목적의 징벌적 과세	-탈세방지를 위한 누진 세율 과세 -소수의 개인주주로 구성된 동족회사에만 적용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실효성이 없고 위험의 소지도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실효성과 위험성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도입은 적절하지 못함

-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문제되었던 배당, 투자(토지분)를 제외하고, 법인세율 인상 구간과 동시 적용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논란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모태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효성이 없고, 위험의 소지도 있는데 동 제도를 실질적으로 연장한다면 동일한 결과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
- 하반기 들어 경기 개선 추세가 약화되는 상황에서<sup>53)</sup>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기업들의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2017 세법개정안에는 혁신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인책은 없음
- 우리나라는 2017 세법개정안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1~3% → 0~2%), 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3% →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80% → 50~60%) 등 장려책 없이 기업의 세부담만 늘리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사내유보금을 설비투자나 임금증가로 순환할 필요성은 동감하고 있으나, 그 방식으로는 설비투자 시 고정자산세 감면, 설비등투자촉진세제의 장려책 및 기업과의 협조방안을 쓰고 있음

○ 글로벌 조세 경쟁 시대에 세금은 국제적 추세 또는 기준에 맞추어야만 자국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고 조세중립성을 유지<sup>54)</sup>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한다고 하므로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및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음
- 특히, 투자 및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임. 기존 국내외 사내유보금 과세의 목적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달리 개인배당소득세 회피 방지였음
-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할 것

53) KDI, “경제동향 8월호”, 2017.8.

54) 이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표현됨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7년 9월 27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